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062호(號) 1933(昭和 8)년 11월 22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68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3(昭和 8)년 11월 2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금광(金鑛)
- 2 발 역(發 驛) 초량(草梁)
- 3 착 역(著 驛) 진남포(鎭南浦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1톤(噸)당(當) 3원(圓) 10전(錢)
- 6 기간(期間) 1933(昭和 8)년 11월 22일부터
1934(昭和 9)년 11월 21일까지
- 7 기사(記事) 소정임륜(所定賃率)에 의(依)해 4천톤(噸) 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한 것에 대
(對)해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
액(差額)을 할려(割戻)하는 것으로 함.